

#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가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: 제3581호
- 다. 제안일자: 2026. 3. 30.
- 라. 회부일자: 2026. 3. 31.

### 2. 제 안 사 유

-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실외이동로봇 운행 기준을 준용하여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통행 허용 근거를 마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운행 규정 신설(안 제17조제1항제10호의2)

### 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합 의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26.1.29.~2.18.) 결과: 의견없음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의 운행 및 운행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<sup>1)</sup>(’24.4.9)에 따라 도시공원 등에서 실외이동로봇<sup>2)</sup>의 차도 외의 장소 운행이 금지되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차도 외의 장소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상황임.
- 안 제17조제1항제10호의2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준용하여 최근 순찰·안내·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외이동로봇의 한강공원 내 운행 및 운행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지원 및 시민 안전 도모 측면에서 이견 없음.

다만, 본 개정안에서는 운행안전인증, 질량, 운행속도 등 기본 요건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위법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바, 운영 방식, 운행구간,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 및 긴급 상황 대응 체계 등 한강공원의 상황을 고려한 세부 관리·운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---

1) 제50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~ 5. (생략)

5의2.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4호의2의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가.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 일 것

나. 실외이동로봇의 질량(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)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

다.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 것

라. 공원관리청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할 것

6. ~ 8. (생략)

2)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4의2. “실외이동로봇”이란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(원격제어를 포함한다)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로봇을 말한다.